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2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이원택・이상직・윤미향

박성준 · 김경만 · 한병도

남인순 · 김정호 · 전재수

김윤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 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써,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 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,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, 제17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평가하여야 한다"를 "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평가"를 "평가 및 공표"로 한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)	제17조(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	①
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	
에 관하여 <u>평가하여야 한다</u> .	
	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
	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
	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
	<u>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</u>
③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추	<u>4</u>
진성과 <u>평가</u> 에 필요한 사항은	<u>평가 및 공표</u>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